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內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 청원번호 : 제6호
- 청 원 자 :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최진아 외 8,255명
- 소개의원 :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 교통위원회)
- 접수일자 : 2019년 8월 1일
- 회부일자 : 2019년 8월 2일

## II . 청원요지

- 강남구 세곡지역은 2025년까지 중학생 학생수가 2,544명에 달해 최대 2개교의 학교신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학교 신설 계획이 없어 학생들이 40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함. 따라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내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청원함.

## III .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 강남구 세곡지역은 자곡사거리를 중심으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등 4개의 주택지구의 개발로 중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학교 신설 계획이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함. 따라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내 확보된 학교용지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함.

#### **IV.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청원법」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청원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청원은 2019년 8월 1일 김태호 의원의 소개로 최진아 외 8,255명으로부터 청원번호 제6호으로 제출되어 2019년 8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청원은 세곡 지역 인근의 중학교만으로는 향후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학교용지로 지정된 수서동 187번지 일대에 중학교를 설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세곡지역 내 개발지구 중학교 설립 개요

- 세곡지역은 행정동 경계상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263,814㎡)와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940,361㎡),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771,121㎡)가 순차적으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 동 지역은 지구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인하여 세곡중학교를 신설하고 인근 수서중학교로 학생을 분산배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의 중학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곡지역 주민들은 2016년 2차례 청원을 통해 서울시의회에 중학교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의회는 해당 청원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세곡지역내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생 수요 미흡으로 부적정 결과가 나왔고(예산담당관-12331, 2016.12.30.) 이에 따라 동 지역의 중학교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한편, 강남구 수서동 일대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해당 지구계획 내 수서동 187번지 일대에 학교용지(10,624㎡)가 마련되었는바<sup>1)</sup>,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용지에 대해 학교설립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sup>2)</sup>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표-1] 중학교 신설 추진 경과**

일 별	협 의 내 용
2005.12.29.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계획승인[중학교부지 10,762㎡(세곡동 192번지)]
2011. 2.25.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중학교용지 해제
2016. 4.	세곡동 192번지 중학교 설립 주민 청원
2016. 4.25.	세곡동 192번지 주택건설사업 보류 요청(시교육청→SH, 서울시)
2016. 6.27.	서울시의회 세곡동 중학교 신설 청원 채택
2016.10.21.	(가칭)세곡2중 재정투자심사 자료 제출
2016.10.25.	서울시교육청 제4회 재정투자심사 결과 → 적정
2016.11. 9.	(가칭)세곡2중 신설 관련 주민설명회 실시
2016.12.30.	교육부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 부적정 (학교설립 수요 미흡)
2017. 7. 5.	서울시교육청 제2회 재정투자심사 결과 → 재검토(학교신설 수요 미흡, 주변학교 이전 재배치)
2017.11.21.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협의 (교육지원청→LH공사)→ 학교용지 10,624㎡ 요청
2018. 1. 9.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학교용지 10,624㎡ 고시)
2018. 12.	수서동 개발에 따른 학생배치 여건 연구용역 예산 편성(30,000천원)
2019. 6.	수서동 개발에 따른 학생배치 여건 연구용역 진행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2018.1.9

2) 수서동 개발에 따른 학생배치 여건 연구용역 실시  
 - 목적: 세곡지역 학교 신설 또는 이전 타당성 검토 등  
 - 연구용역 기간 : 2019.7.3 ~ 2019.10.21  
 - 연구결과 활용: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세곡지역 학교 설립 여부 검토

## 나. 세곡지역내 학생 수 증가 및 통학불편에 대한 의견

- 현재 동 청원의 대상지인 세곡 지역의 경우 중학교가 세곡중학교 1개만 존재하는 반면 대상지역의 중학생은 지속적인 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학령인구 기준으로 2026년에 2,49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684.,2019.8.27.).
- 이러한 학생수 증가는 현재 세곡중학교와 인근에 위치한 수서중학교로의 분산 수용만으로는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있고, 세곡중학교의 경우 2025년에는 급당인원이 36.4명, 수서중학교의 경우 2027년에 33.9명으로 과대학급이 예상되는바, 학생들의 학업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 세곡지역 중장기학생배치계획

구 분		중장기학생배치계획 (학생배치지표상 연도별 급당인원)									
		2019 (27명)	2020 (26명)	2021 (26명)	2022 (25명)	2023 (25명)	2024 ( 명)	2025 ( 명)	2026 ( 명)	2027 ( 명)	2028 ( 명)
수서중	학생 수	463	519	575	632	680	749	826	878	916	894
	학급 수	24(2)	25(2)	27(2)	29(2)	29(2)	29(2)	29(2)	29(2)	29(2)	29(2)
	급당인원	21.0	22.6	23.0	23.4	25.2	27.7	30.6	32.5	33.9	33.1
세곡중	학생 수	802	899	981	1,105	1,177	1,271	1,384	1,338	1,217	1,018
	학급 수	34(2)	36(2)	38(2)	38(2)	40(2)	40(2)	40(2)	40(2)	40(2)	40(2)
	급당인원	25.1	26.4	27.3	30.7	31.0	33.4	36.4	35.2	32.0	26.8

- 한편 현재 세곡 지역내 수서중학교로 통학하는 중학생의 경우에는 일부 구간(밤고개)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통학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등 통학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sup>3)</sup>.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평가대상별 평가기준)

[별표1]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0분 정도를 적정 통학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지역의 실제 통학거리는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3] 수서중 통학 여건**

지구구분	정류장에서 최장거리 단지 기준(네이버기준)		실측 통학시간	통학여건
	거리	시간		
세곡2보금 자리지구 3,4단지	3.48km	약31분	30~35분	- 통학시간과 통근시간이 겹쳐 대중교통 혼잡으로 중학생의 경우 버스이용의 어려움 발생
세곡2보금 자리지구 6,8단지	3.84km	약30분	30~35분	- 상습정체구간인 밤고개로를 지나 통학할 경우 신호대기로 인해 통학 시간이 추가 발생함.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 청원과 관련하여 동 지역의 중학생수가 2025년 이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중학교 신설은 곤란하나,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교실 증축 또는 이전·재배치 등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 -11282.,2019.8.21.).

**다. 종합의견**

- 현재 동 세곡지역은 중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곡중과 수서중만으로 학생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학급당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는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불편 해소를 위해 동 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나. 학생의 통학범위

- 2)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적정한 거리일 것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현재 수서동 지역의 학교용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 지역의 학생들의 불편함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그동안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동 세곡지역에서 수서중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 그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포함한 대책마련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 수서중 통학버스 지원 현황**

연도별	통학버스대수	이용학생수		지원기관	지원금액
		등교	하교		
2015	2대 4회	163명	X	서울특별시교육청	20,000천원
2016	2대 4회	185명	X	강남구청	57,000천원
2017	3대 5회	215명	X	강남구청	84,564천원
2018	3대 5회	225명	X	강남구청	70,000천원
2019	3대 5회	250명	X	서울특별시	65,000천원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58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 청원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2호, 2014.12.30., 일부개정]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시행 2017. 9. 21.] [서울특별시규칙 제30호, 2017. 9. 21., 일부개정]

제6조(청원의 심사·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3.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